
202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신청요강

※ 본 신청요강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해당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025. 2.



연구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공통 자격	국내·외 대학의 석사 학위 <u>또는</u> 박사 학위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만 64세 이하 ('60.1.1. 이후 출생자)의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학위별 연구 업적	① 석사 학위 소지자 : '20.1.1.~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연구업적 3편 이상 ② 박사 학위 소지자 : '20.1.1.~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연구업적 1편 이상 ※ 최근 5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연구자의 경우, '17.1.1.~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업적 산정

- ② 사업 신청 전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 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세부 방법 ii페이지 참고)
- ③ 본 사업의 평가는 **무기명 평가(Blind Review)**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연구활동 계획서 내용 및 파일명, 대표연구업적 정보 등에 **연구책임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소속, 성명 등)도 기재해서는 안되며(지도교수명, 논문(저서) 제목 등), 위반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 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⑤ **신청 마감 기한 이후, 시스템 신청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마감일 18시)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폭주하여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 3~4시간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⑥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 절차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分	내 용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신청 완료		
연구자 신청 기간	2025. 3. 7. (금), 14:00 ~ 2025. 3. 14. (금),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승인 기간	2025. 3. 7. (금), 14:00 ~ 2025. 3. 18. (화), 18:00까지		
제출 서류	①	(필수)	연구활동 계획서
	②	(필수)	최종학위 증명서
	③	(출산 트랙 해당 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항목 입력 안내

▶ 필수항목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 미입력 시 과제 신청 불가

구분	항목	
기본정보	성별, 출생년도, 연구실전화, 핸드폰, EMAIL주소, 직급, 소속기관, 학과, 전공 등 ※ 연락처 누락 및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불이익 발생 시, 해당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취득학위	학위구분	선행 학위정보 입력 필수 - 박사* 학위자 : 박사, 석사, 학사 정보 * 석·박사 통합 학위의 경우 박사, 학사 정보 - 석사 학위자 : 석사, 학사 정보
	수여대학	재단의 기관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
	학과	재단의 학과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은 텍스트로 입력 ※ 텍스트 입력방법 : 학과 입력란 옆의 돋보기 그림을 클릭 ▶ 학과명 입력 ▶ 직접입력 버튼 클릭
	지도교수명	지도교수를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 KRI에 등록이 안 된 지도교수는 성명을 텍스트로 입력 ※ 텍스트 입력방법 : 지도교수명 란에 직접 입력

※ 세부 입력방법은 [KRI 입력매뉴얼] 참고 요망

▶ 주의사항

구분	내용
한국연구자정보(KRI) 신규 가입자의 경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선가입 후, 국가연구자 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URL : https://www.iris.go.kr/
신청자 소속기관이 협정체결기관인 경우	연구자가 직접 KRI 정보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소속기관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정보 수정 요청 필요 ※ 협정체결기관 확인 방법 : KRI 홈페이지 > 협정체결기관현황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소속기관의 관련부서 또는 KRI 입력매뉴얼 참조

연구과제 신청 체크리스트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준비사항을 **모두 만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지원자격 요건 확인	<p>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학위별 최근 5년 내(2020.1.1. 이후) 요구 연구업적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p> <p>사업 신청 시, 업적으로 인정되는 논문은 게재가 완료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됨을 알고 있다.</p> <p>※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은 연구업적으로 인정 불가</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관연구기관 사전 협의	<p>사전에 신청할 주관연구기관(대학 등)을 정하고, 사업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p> <p>주관연구기관을 섭외하지 못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의 주관연구기관 역할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위탁 관리기관이 수행함을 알고 있다.</p>	
한국연구자정보 (KRI) 입력 확인	<p>사업 신청 전,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 완료하였으며,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고 있다.</p> <p>※ 학위정보 입력 시, 선행 학위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함</p> <p>사업 신청 전, IRIS 가입을 통한 NRI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을 완료하여, NRI와 KRI의 국가연구자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p>	
접수 마감기한 확인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 기준으로 시스템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으로 연구자 접수 및 주관기관 확인을 완료해야 함 을 알고 있다.	
기초학문 자료센터 (KRM) 활용	기존에 선정된 연구과제, 학문분야의 연구동향 등은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 자료센터(KRM, www.krm.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생명윤리위원회 (IRB)	<p>신청 전,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으며, 관련 문의는 각 소속기관의 IRB에서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p> <p>※ 소속기관 IRB 이용이 불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www.nibp.kr)의 공용 IRB 활용 가능</p>	
문의처 확인	<p>사업 및 신청, 평가 관련 질의사항은 P.44 문의처의 각 담당부서로 연락해야 함을 알고 있다.</p> <p>접수 시스템(e-R&D) 및 KRI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042-869-7744)으로 문의해야 함을 알고 있다.</p>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연구활동 계획서 작성 기준	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까지만 허용됨을 알고 있다. (단, 연구활동계획서 내 '연구요약' 중 "한글 작성"이 명시된 부분은 반드시 한글로 작성)	
	계획서 작성 시, 글씨크기는 13point(권장) 연구활동계획서 분량은 10쪽 이내 (참고문헌은 쪽수에 미포함)로 작성하였다. ※ 분량 기준(Ⅱ.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Ⅱ. 4. 연구추진일정)	
	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무기명 평가 (Blind Review)	본 사업은 무기명 평가(Blind Review) 대상 사업으로, 연구활동 계획서 작성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소속, 성명, 지도교수명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참고문헌은 해당사항 없음)	
개인정보 기재 금지	제출한 파일명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예시) 연구활동계획서_홍길동.hwp와 같이 파일명 내 개인정보 기재 금지	
시스템 접수 완료 확인	접수완료 후 수정 시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을 알고 있다.	
	최종 접수완료 후 앞의 탭으로 돌아가 '클릭' 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다.(접수의 최종행위는 반드시 [신청완료] 의 버튼 을 누르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함)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접수환경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접수환경(일반/출산 중 택 1) 에 지원한 것을 확인하였다.	
접수내용 검토	신규과제 접수 후 접수내역을 출력하여 기본입력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최종 확인	업로드 한 연구활동계획서가 제출하고자 하는 최종본임을 확인하였으며, (작성내용 및 pdf변환 시 페이지 모아찍기 등 확인)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평가 등)이 있음을 알고 있다.	

- 주요사항 요약 -

구분	2024	2025
지원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총예산 : 25,500백만원(1,275과제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 25,500백만원(1,275과제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총예산 : 25,900백만원(1,295과제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 25,900백만원(1,295과제 내외)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input type="radio"/> 만 64세 이하 <input type="radio"/> 최근 5년 이내(최근 5년 내 출산한 여성의 경우 8년 이내) 연구실적 1편 이상 <input type="radio"/> 국내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거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input type="radio"/> 만 64세 이하 <input type="radio"/> (석사 학위)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3편 이상 <input type="radio"/> (박사 학위)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1편 이상 <p>※ 최근 5년 내 출산한 여성의 경우 8년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국내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거주하는 자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과제당 지원비 : 2,000만 원 이내 (간접비 100만 원 이내 포함) 	<input type="radio"/> 좌동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1년 	<input type="radio"/> 좌동
평가절차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요건심사 → 전공평가 (온라인+PM Review) → 종합평가 	<input type="radio"/> 좌동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제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input type="radio"/> 최종결과물 : 연구기간 종료 후 24 개월 이내 	<input type="radio"/> 좌동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필 수) 연구활동계획서 <input type="radio"/> (필 수) 최종학위증명서 <input type="radio"/> (출산트랙)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 관계증명서 	<input type="radio"/> 좌동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신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공고 및 접수 / 3~4월 평가 - 연구개시 : 6.1. 	<input type="radio"/> 좌동

- 과제수행 주요절차 -



- 차 례 -

I. 사업목적 및 개요	1
II. 지원내용	3
III. 신 청	4
1. 신청자격	4
2. 신청 및 수행제한	6
3. 신청기간 및 방법	8
4. 신청서류 및 절차	9
5. 온라인 신청 관련 안내	10
IV. 선정평가	12
V. 사업비 관리	15
VI. 연구과제 관리	16
1. 신분변동 후속조치	16
2. 보고서 제출	17
3.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18
4. 학술활동 성과 관리	20
VII. 기타사항	21
[붙임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23
[붙임2] 평가 항목 및 배점	36
[붙임3] 연구활동계획서 양식	38
[붙임4] 사업 참여 요건 유지 확약서 양식	43
[붙임5] 문의처	44

I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여 혁신성장의 근간인 학술연구의 토대 강화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 및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인문사회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4, 교육부)

3. 중점 추진방향

- 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신진연구자로서의 성장 발판 마련
 - 학술연구교수 사업 내 1인 1과제 신청 체계 확립*
 - * (당초) A, B유형 동시 신청 허용(1과제만 수행) → (변경) A, B유형 중 1과제만 신청 가능
 - 학술연구교수 B유형 업적요건 강화
 - ※ (당초) 석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1편 이상
→ (변경) 석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3편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1편 이상
- 소외분야 연구 장려를 위해 신규과제 예산의 5% 내외 지원(B유형)
- 출산의 이유로 경력단절 중인 인문사회분야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업적 산정 기간 확대
- 교육부 및 연구재단 우수성과 과제의 연구자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성과자 우대 및 우수성과 창출 도모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총 1회 한정)

4. 기대효과

- 학문후속세대 학술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의 질적 성과 제고
- 인문사회분야의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

5. 추진일정

일정	추진 내용
'25년 1월	<input type="checkbox"/> '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25년 2월	<input type="checkbox"/> 신규과제 신청요강 공고 및 접수
'25년 3~4월	<input type="checkbox"/> 신규과제 선정 평가
'25년 6월	<input type="checkbox"/> 신규과제 연구개시(6.1.)

※ 단,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I

지원내용

1. 예산

(단위: 백만원, 과제)

구 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비 고
학술연구교수(B유형)	25,900	1,295 내외	-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액 : 과제당 20백만원 이내/연

- 연구수당 : 19백만원/연

- 간접비 : 1백만원 이내/연

※ 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여 타 과제로부터 인건비를 받더라도 본 사업
연구비 수혜가 가능하도록 허용

※ 간접비는 협약시점 기관별 고시비율에 따르되, 최대 1백만원/연 이내로 함

- 지원기간 : 1년

- 연구 개시일 : 2025년 6월 1일

III

신청

1. 신청자격

가. 자격요건

- **(공통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 64세 이하 ("60.1.1. 이후 출생자)인 연구자로서
국내·외 대학 석사 학위(석·박사 통합과정 제외*)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신청 불가
- **연구업적**
 - 석사 학위 소지자 :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3편 이상
 - 박사 학위 소지자 :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1편 이상

※ 최근 5년 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연구자는 최근 8년 내 연구업적으로 계산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 산정 기간 : 최근 5년 이내(2020. 1. 1.부터 ~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 단, 최근 5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최근 8년 이내(17.1.1.부터~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연구업적으로 계산(신청 시, 관련 증빙(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요건 미부합 시 탈락 처리)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1건은 업적 1편으로 산정
※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공동저자 수와 무관)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으로 산정
※ 인정 기준
 - ISBN이 부여된 도서
 - 저자명이 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 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 불인정
- 특허 : 특허(등록 특허) 1건은 업적 1편으로 산정
※ 출원 특허는 인정하지 않으며 등록된 특허에 한해 인정함

- **(취업여부)**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미취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자는 연구 개시 전에 퇴직하는 등 연구 개시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고등교육법」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과제 수행 가능
* 초·중·고교·어학교육원 및 국제교육원 등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강사 제외
※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희망 일자리 사업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일시적
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 수행 가능

- **(국내거주)** 국내·해외 거주자 모두 신청 가능하나, 과제 수행기간 중에는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함
- ※ 본 사업은 국내 거주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과제 개시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주관연구기관

- **(원칙)** 주관연구기관을 대학(고등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전임 연구자의 대학 내 연구인프라 활용 및 연구 공동체와 교류기회 확대
- **(예외)**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으로 과제 신청 가능

* 재단으로 신청한 과제는 추후 예비선정 시 소속(예정) 및 최종학위 수여대학 등 연계 대학 현황을 파악하여 주관연구기관 역할 수행 가능 여부 별도 확인 조치 예정

-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한 연구자가 선정될 경우, 해당 연구자의 주관연구기관을 별도로 위탁·지정함
- ※ 별도의 주관연구기관을 위탁·지정하더라도 선정자가 해당 기관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대학과 같은 도서관, 전산실 이용 등의 편의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 단, 예비선정 이후 대학에서 주관기관 역할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는 해당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2. 신청 및 수행제한

- (2책 3공 운영)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 할 수 있는 과제는 2개까지 허용
 - ※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까지 허용
 - (과제 수 미포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및 학술 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하단 표 참고)
 -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단, 연구기간 연장 과제의 경우 변경된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별 연구개시일 변경으로 당해연도 신규과제와 종료과제의 동시 수행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동시수행 허용)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 | | | |
|------------------------|-----------------|------------|
| ① 우수학자지원 | ② 인문사회연구소 문제해결형 | ③ 인문학대중화 |
| ④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연구집단지원 | | |
| ⑤ 학술단체지원 | ⑥ 연구윤리활동지원 | ⑦ 기초학문자료센터 |

- (신청 제한) 학술연구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제재처분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 제외 조치가 확정 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 신청 가능
 - 다만, 연구과제 신청 완료 이후라도 최종 선정 전까지 신청과제의 연구 책임자가 제재를 받거나 수행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연구과제 선정 취소 등 조치
 - 기 수행 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제출 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지원 구분) 학술연구지원사업을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지원

개인 및 공동연구군	집단연구군	성과확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 개인연구지원(신진·중견) · 공동연구지원(국내·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사회연구소 · 인문한국지원사업(HK+, HK 3.0) · 사회과학연구(우수연구집단육성, 글로벌아젠다)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그룹연구소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저번역 · 저술출판

- **(연구책임자)**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 3개 사업군에 대하여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기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과제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과제 또는 신청과제를 포기해야 함
 - ※ 기 수행 중인 과제가 '2책 3공 과제수 미포함' 사업에 해당하여도 집단연구군 내에서는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사업군내 신청/수행 중복 가능
- **(공동연구원)** 사업군과 상관없이 현재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까지 신청 및 수행 가능

< 예외 및 주의 사항 >

1. 동일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A·B유형 중 1개 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A·B유형 신청자는 신진연구 또는 중견연구 중 1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하는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사업 수행 우선순위: ① 우수학자 → ②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 ③신진 또는 중견 → ④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 중견연구, 우수학자 지원사업은 동시 수행 불가하며, 우선순위 사업에 신청되는 경우 후순위 사업은 자동 취소
2.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계획서가 유사·중복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과제 탈락 처리(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규과제 중복/표절 이의신청 관련 과제에 대해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 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3.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중 성비위, 갑질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최대 2년간 선정 제외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 (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 4. '18~'20년 선정 과제의 경우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 확정 시, 타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가능

기타사항

- 과제 참여 연구자의 임신·육아 휴직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중단 및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수행 유지
- 단, 고용 관련 법령에 따라 과제 참여 상태 유지는 가능하나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 불가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구 분	신청 기간
연구자 신청	2025년 3월 7일 (금) 14:00 ~ 3월 14일 (금)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2025년 3월 7일 (화) 14:00 ~ 3월 18일 (화) 18:00까지

- ※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00:00에 시스템 접속이 자동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 클릭을 완료해야 함.
- ※ 마감기한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든 추가로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안내 매뉴얼 참고)

- 온라인 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신청 서류 및 절차

신청 서류 ※ 1), 2)는 필수 제출 / 3)은 해당자에 한해 제출

1) 연구활동 계획서

2) 최종학위증명서(최종 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3) (출산 트랙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최근 5년 이내(20.1.1~온라인 신청 마감일)

출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트랙 신청자는 출산에 따른 업적 산정기간을 별도로 적용하기 위한 것일 뿐,
선정 평가를 별개로 하거나 선정 쿼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삭제 후 제출 요망, 파일 비밀번호 및 잠금 설정 등 불가

※ 상기 신청서류와 별개로, 자격요건 검토 등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절차

구분	수행자	수행 내용	
① 사전준비 (연구자 등록 및 개인정보 현행화)	연구자	①-1	사업 신청대상 확인(자격요건 등)
		①-2	IRIS (https://www.iris.go.kr/main.do) 회원가입 후 NRI 국가연구자 등록/전환
		①-3	KRI (https://www.kri.go.kr) 실명(재)인증 및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현행화 - KRI 인증방법 : KRI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뉴 → 실명(재)인증 → 본인인증 ※ IRIS 가입 후 부여받은 NRI 국가연구자번호와 KRI 연구자 번호가 일치해야 함
		①-4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①-5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② 온라인 신청	연구자	②-1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
		②-2	【연구활동계획서】 및 기타 파일 탑재
		②-3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제출(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③ 기관 확인	주관 연구 기관	③-1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	----------------	-----	----------------------

5. 온라인 신청 관련 안내

가.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구분	KRI 신규 가입자 (‘21.8이후 KRI에서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이 불가)	KRI 기존 가입자
개별	<p>1)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가입 후, 국가 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가입하여 실명 인증 시 NRI에서 발급받은 국가연구자번호와 동일한 국가연구자번호를 KRI에서도 부여함 	<p>1)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회원가입 후, 국가 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I에 등록된 국가연구자번호와 NRI의 국가 연구자번호는 일치하여야 함. 해당 절차는 신규과제 신청을 위한 필수는 아니나, 추후 선정되는 경우 연구비 지급 전 반드시 완료 하여야 함 <p>※ 문의: IRIS 고객센터 (☎ 1877-2041)</p>
공통	<p>2)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본인의 연구업적 등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입력(수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KRI 입력내용 중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학위정보(최종학위를 포함한 소지 학위 전체)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함. 아울러 KRI내에서 신청자의 정보공개여부 입력란은 원활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공개’로 설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KRI에 추가 수정한 정보가 연동되어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KRI에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취소하고 KRI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과제접수 후 신청내용 및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해 연락할 수 있으며 이메일, 연락처 등의 누락 및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p>3)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붙임3]의 “연구활동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글」 또는 「MS워드」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p> <p>4) 신청자는 사전에 주관연구기관을 정하고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와 과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5)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심사요청학문분야를 ‘연구분야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 → 사업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u>학술연구분야분류</u> [클릭]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p> <p>6) 기 선정과제 정보 및 해당분야 연구동향 확인은 기초학문자료센터(KRM) 홈페이지를 활용</p> <p><input type="checkbox"/> 기초학문자료센터(KRM, www.krm.or.kr)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등 관련자료를 DB로 구축·제공하여 연구자들의 후속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구축된 시스템</p>	

나.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1)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활동 계획서' 파일 및 신청 서류들을 탑재하여야 함
- 2) 신청자가 KRI에 입력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은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기본 자료로만 활용함 (업적 건수에 따른 가점 등은 없음)
- 3)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온라인 신청 내용을 수정한 후에는(파일 교체 포함)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 함(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4) 온라인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별도의 자필 서명 및 파일 탑재 없이 과제 신청 시 '온라인 제출'로 대체함

다. 온라인 신청 후 유의사항

- 1) 신청자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 1부를 출력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 등)에 제출※ 단, 주관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인쇄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2) 주관연구기관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
 - 주관연구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하고, 주관연구기관 확인 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 지원시스템(e-R&D)을 통해 승인 조치하여야 함
(주관연구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요건에 어긋날 경우 선정이 취소됨

IV**선정평가****1. 평가 단계**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 등에 의한 확인)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 평가	연구의 창의성 및 연구활동 계획서 우수성 등	전공평가단
		PM Review (필요시)	온라인 평가 결과 검토	PM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2. 평가절차 및 내용**가. 1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 등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나. 2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 전문가에 의한 온라인 개별 평가
 - 온라인 평가 + PM Review*(필요 시)
- * PM Review :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 검토(평가자 간 점수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검증 및 보완 등)
- ※ 단, 평가 방법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내용 : 연구활동계획의 우수성 등
 - ※ 연구활동 계획서 작성 분량 제한 : 10쪽 이내 (글자 크기는 권장사항(13point) 또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 작성하되, 분량 초과의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 내용 [붙임2] 참고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의 창의성 (30)	연구주제의 창의성	15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도전성	15
연구 계획의 우수성 (50)	연구목적의 타당성	20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연구실행 가능성	30
학문 발전 기여도 (20)	학문발전 기여도	20
합계		100

다. 3단계 :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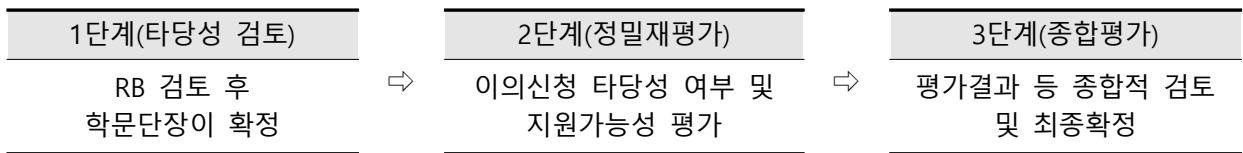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 '22년~'24년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 과제의 대표자 1인에게는 가산점(3점) 부여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적용)
- ※ 가산점 활용 희망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신청마감일 이후 15일 이내 재단으로
가산점 사용 요청 공문을 제출해야 함
- ※ 평가결과 최종 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3. 선정 및 협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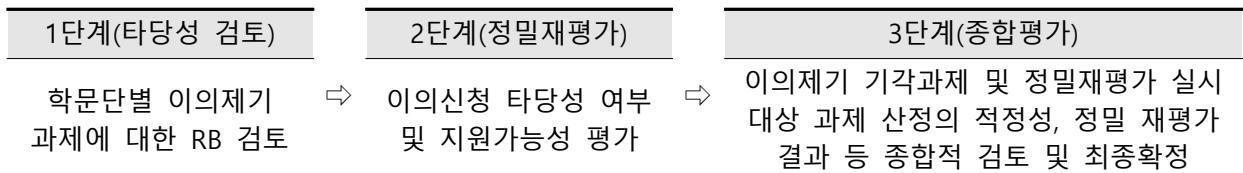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표절 및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해 표절 및 중복 방지 관련 이의신청제도 운영 >

- 중복/표절 과제 처리절차



- 이의제기 과제 처리절차



- 별도의 세부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 간 협약체결

- 협약체결 후에도 신청자격 요건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취소
-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재단에 보고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 연구과제 협약체결 전,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가능)
 - 연구과제 협약체결 후, 연구원이 변경되어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가능)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자가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1. 사업비 지급

- 사업비는 연구과제 협약체결 이후 재단에서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으로 지급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은 사업비 지급 전 및 연구 기간 종료 후 연구책임자의 신분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세부 절차 등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신분 변동 등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 후, 과제 중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문을 통해 재단으로 즉시 보고하고 연구비 환수 등 조치
 - ※ 후속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공문 보고 미시행
- 연구책임자는 본인이 신분 변동 발생 즉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재단으로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함 ※ 세부내용은 하단 “신분변동 후속조치” 참고

연구비 지급 시점 및 후속 조치 사항			
차수	지급 시점	지급 금액(세전)	조치사항
1차	연구개시 시점	4,750천원	1) 연구비 지급 전, 연구책임자 <u>신분변동 확인 필수</u>
2차	연구개시 3개월 경과 후	4,750천원	2) <u>신분 변동에 따른 중단사유 해당 시</u> , 공문을 통해 재단보고 및 후속조치 진행
3차	연구개시 6개월 경과 후	4,750천원	
4차	연구개시 11개월 경과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 후 지급)	4,750천원	3) <u>신분 미변동 시에는 별도 보고 없이 연구비 지급</u>

- 주관연구기관은 총 4회차로 구분하여 연구비 지급 시점마다 신분변동 확인 후, 연구책임자에게 계좌 이체

2.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중앙관리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관련 사항 개정 시, 집행 시점의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기준을 따름
 - 연구수당^{*}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총 4회차로 구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며, 연구책임자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 * 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에 따라, 타 과제로부터 인건비를 받더라도 본 사업 연구비 수혜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1. 신분변동 후속조치

가. 취업 등

취업 시기	취업기관 (신분)	후속조치
연구 개시일 이전 ※ 개시일(6.1.) 포함	-	(과제 중단) 연구 개시일 이전(개시일 포함) 취업 상태가 확인될 경우,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과제 중단 ※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경우 제외(연구수행 가능)
		(연구비 반납) 연구비(직접비 및 간접비) 전액 반납
		(결과보고서, 최종결과물) 제출의무 없음
연구 개시일 이후	① 대학 등 (연구자)	(계속 수행) 대학 등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비 수혜기관에 연구자* 신분으로 취업한 경우 과제 계속 지원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자 신분이 아닌 경우 중단
		(과제 중단) 취업 등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 변동일 기준으로 과제 중단
	② 민간기관 (연구자 외)	(연구비 반납) 연구수당(직접비)은 중단일 기준으로 월할 후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고, 간접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납
		(결과보고서 제출) 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최종결과물 제출) 중단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나. 해외 체류

- 본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과제 수행기간 중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함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재단의 사전 심사를 통해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 체류는 재단 승인 불필요
 - ※ 단,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 체류라도 체류 기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국내 거주로 볼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로 간주할 수 있음
 - 사전 승인 필요 시, 해외 출국 최소 3주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공문 신청
 - 해외 체류 계획과 연구 수행의 관련성 및 적절성 등 검토
- 사전 승인 없이 장기 해외 체류 사실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과제 중단 및 제재 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음

2. 보고서 제출

가.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중단과제의 경우, 중단일 기준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 파일 탑재
 - ※ 연구활동 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및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지정된 양식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
 - **학술활동 요약문(국·영문)** : 시스템 내 직접 입력
 - ※ 학술활동 결과물 내용을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 시스템 내 직접 입력
 - ※ 초록,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색인어 등
 -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 파일 탑재 (해당 시)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의 공개 및 활용**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예 : 허위 및 표절 등),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처분 등 조치 가능

나.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중단과제의 경우, 중단일 기준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제출(통합이지바로)

3.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가.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 총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 ※ (개인연구지원사업)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 논문의 경우, 게재 예정 증명서와 논문 원고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1년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 상기 증빙자료는 결과물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주관연구기관 공문을 통해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 및 인정 기준

제출 기준	인정 기준
지원 년수 × 업적 1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 한국연구재단(KCI) 등재·등재후보학술지,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경우 불인정) 시 업적 1편으로 인정 ■ 저서·역서 : 전문학술 저서 또는 역서로, 단독저자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자 1건은 업적 2편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BN이 부여된 도서 - 전문학술 도서는 ISBN 번호 중 독자대상기호가 "9"이어야 함 (독자대상기호 관련 상세 자료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ISBN 구조 참고 (URL: https://www.nl.go.kr/seoji/contents/S20101050000.do) - 저자명이 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 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는 불인정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25.11.30. 이내)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으로 불인정
- ※ 연구활동 계획서 대비 적정성 등 검토 후, 학술활동 결과물로 인정(필요 시)
- ※ 사사표기가 된 결과물만 인정

- 사사표기

학술활동 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함 (미표기 시 성과로 불인정)
--

학술활동 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함 (미표기 시 성과로 불인정)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

- ※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에 한하여 병기를 허용함
- 학술활동 결과물 미제출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처분 등 조치 가능

나. 종료과제 결과평가

- 평가시기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후
-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하며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로 정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결과의 질적 우수성	30
	결과의 독창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30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학문적 파급 효과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노력	20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20
	참고 자료의 적절성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은 별도의 세부 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대상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미이행 과제
- ※ 단, 제출기한 내 인정 기준에 맞는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한 과제의 경우, 결과평가 면제
- 평가결과 및 조치 : 학술활동 결과물 미제출 시,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처분 등 조치 가능

4. 학술활동 성과 관리

- 연구자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후에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학술활동 결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을 즉시 송부하여야 함

< 학술활동 결과물이란 >

-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 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1. 강의료 지급 가이드 라인

【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연구자의 강의 관련 가이드라인 】

- (적용대상)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는 비전임 연구자들이 대학 강의 시 적용
- (강의료) 연구자들이 대학 강의 시 강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 시 (시간)강사 지급 단가와 동일하게 지급
- (강의학점) 강의 가능 학점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의무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야 함
 -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또는 관계법령, 각 연구사업별 시간 강의 학점 제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함

2.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 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활동 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 활용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www.nibp.kr)

* 인간대상 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연구윤리 교육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유효기간 종료 후 재이수 필요)
- 개인연구에서 연구책임자가 출산·육아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최대 2년 이내)을 허용하며, 이와 관련한 지침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관련 조항을 준용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단 보고(주관연구기관을 통해 공문 발송)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전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 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안내”(한국연구 재단 홈페이지 ▷ 공지·알림 ▷ 공지사항) 참조
- 본 사업의 경우, 연구노트는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으로 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

불임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공통기준			<p>1.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세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p> <p>가.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p> <p>나.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p> <p>2.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p>3.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p> <p>4.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서는 아니 된다.</p> <p>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p> <p>나. 주류 등 유통성 비용</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p> <p>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p> <p>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p> <p>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p> <p>라.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마. 대학등의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p> <p>1) 대학등이 같은 대학등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p> <p>2) 동일한 대학등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p> <p>가)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p> <p>나) 연구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p> <p>① 대학등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p> <p>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대학등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p>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p>다) 비영리기관 내 종양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p> <p>라)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p> <p>3)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p> <p>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료</p> <p>5. 대학등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p> <p>6. 대학등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p> <p>7.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 기간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p> <p>나. 연구수당</p> <p>다.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학술활동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p> <p>라.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p> <p>8. 간접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p> <p>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p> <p>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p> </div> <p>나. 간접비고시비율 미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p>1)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대학: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5퍼센트</p> <p>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17퍼센트</p>	<p>다. 가목 및 나목의 간접비 계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9.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장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0. 대학등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1.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 및 세세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용제한 세목 및 세세목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12. 연구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비를 다른 대학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p>가. 직접비: 직접비 잔액</p> <p>나.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과제 직접비 ×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p> </div> <p>13. 제12호에 따라 사업비를 이관받은 대학들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8호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2호나목의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학등이 변경된 날로 한다.</p> <p>14. 교육부장관은 정산 결과에 따라 대학등에 지급한 정부지원사업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p> <p>가. 직접비 사용 잔액</p> <p>나.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대학등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 전액</p> <p>다.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p> </div>
직접비	인건비	-	<p>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p> <p>가. 참여연구자</p> <p>나.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p>	<p>1. 대학등의 장은 인건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과제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p> <p>2. 제1호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p>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p>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p> <p>나.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p>	<p>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종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대상과제를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p>
학생 인건비	-		<p>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신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p> <p>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p> <p>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p> <p>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 받는 학생연구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p>	<p>1.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p> <p>가. 학사과정생(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수료자: 월 100만원 이내</p> <p>나. 석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180만원 이내</p> <p>다.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250만원 이내</p> <p>라. 통합과정: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등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종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p>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연구 시설·장비비	연구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1. 연구시설·장비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연구 시설·장비 임차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연구 시설·장비 운영·유지비	1.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3. 대학등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
	연구 인프라 조성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p>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p> <p>5.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p> <p>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p> <p>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p> <p>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p>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 구입비	연구 재료 구입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1. 연구재료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 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기로 계상
	연구 과제 관리비	연구 과제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연구 활동비	연구 재료 제작비	연구 재료 제작비	1.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하여야 한다.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비	1.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1. 회의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 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기기자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출장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1. 출장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계상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출장비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소프트웨어 활용비	<p>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p>	<p>3.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계상 및 집행하려는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p> <p>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p> <p>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p> <p>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p> <p>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p> <p>3.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p>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p>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p>	<p>1. 대학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p> <p>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 할 수 있다.</p>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p>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p> <p>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p> <p>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p>
	연구실 운영비		<p>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p>	<p>1. 연구실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p>
	연구 인력 지원비		<p>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p>	<p>1. 연구인력 지원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p> <p>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 및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p> <p>나.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p> <p>다.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p> <p>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p> <p>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p>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종합 사업 관리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대학등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바.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1. 종합사업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비용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금	1.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과제를 공고할 때 알려야 한다.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탁 연구 개발비			1. 대학등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p>다.</p> <p>3. 대학등의 장은 연구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과제 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 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에서 사용된 사업비로 본다.</p> <p>4.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p> <p>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별표에 따른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다.</p> <p>6. 교육부장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대학등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	1.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자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1.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사업비 정산 인력 등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능률 성과급	1.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p>1. 대학등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의 자체규정(지급 및 평기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p> <p>2. 대학등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p>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3. 대학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회계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준비금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 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제재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1. 학술활동준비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기관 공통 비용	1. 학술활동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단 운영비	1.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1. 사업단 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지원비	기반 시설·장비 구축·운영비	1.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용용도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 관리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학생 연구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 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1. 대학등의 장은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보안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차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1. 연구보안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활동비	1.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1. 연구윤리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 지원금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대학등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1. 연구활동지원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등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성과 활용 지원비		학술 진흥 활동비	1.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학술활동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활동	1. 학술진흥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대학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불임2**평가항목 및 배점****1. 신규과제 선정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의 창의성 (30)	연구주제의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있는가? ◦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하는가?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15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도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이 적절한가? ◦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연구방법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가? 	15
연구 계획의 우수성 (50)	연구목적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이 타당한가? 	20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연구실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 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연구 추진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제안한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확보가 가능한가? 	30
학문 발전 기여도 (20)	학문발전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관련 연구분야 지식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20
합 계			100

2. 결과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30)	결과의 질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학문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연구결과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15
	결과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가 기존의 것과는 달리 새롭고 독창적인가? 	1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30)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10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문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여 발전시키는 것인가? 	10
	학문적 파급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의 새로운 연구방향이나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는가? 	10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 (20)	목표 달성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10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된 목표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 	10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20)	연구 방법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가? 	10
	참고 자료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과정의 참고 자료나 문헌 등이 적절히 인용되었으며 도움이 되었는가? 	10
합계			100

불임3

연구활동 계획서 양식

연구활동계획서 (B 유형)

사업명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 유형)
연구 과제명	국 문	온라인 신청 시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해야 함
	영 문	
연구기간		0000.00.00. ~ 0000.00.00. (1년)

<목차>

- I. 연구 요약 O
- II. 연구 내용 O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O
 - 2. 연구 내용 및 방법 O
 - 3.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 4. 연구 추진 일정 O
 - 5. 참고문헌 O

해당 표는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주의!! 본 연구활동 계획서는 <B유형>용입니다.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맞는 양식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 제출하시는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며, 평가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 ◎ 연구활동 계획서에는 “목차”를 반드시 포함할 것.
- ◎ 연구계획은 신청요강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양식에 따라 기술
- ◎ 연구활동 계획서 중 (II.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II. 4. 연구추진일정)은 A4 용지 10쪽 이내로 작성(단, II. 5. 참고문헌은 쪽수(page)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문헌에는 통상적인 참고문헌 리스트만 기재하며, 임의로 참고자료를 추가 포함하는 경우 요건심사 및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글자크기는 13point로 작성을 권장하나, 계획서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줄 간격 역시 조정 가능
※ 단, 분량 초과 시(10쪽 이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인용자료 및 데이터가 있을 경우, 반드시 출처 명시
- ◎ 선정평가는 무기명 평가(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소속, 성명, 지도교수명, 논문(저서) 제목, 원문 연결 링크 URL 등)를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연구책임자의 책임임. 단,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이름을 삭제할 필요는 없음
※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 ◎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파란색 표기)은 참고 후, 작성 시 삭제

I . 연구 요약

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	
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	
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	<p>※ 제안과제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연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p>
키워드(Keyword) (한글)	
키워드(Keyword) (영어)	

【작성방법】

- 1) 표 양식의 변경 및 삭제는 불가능하며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고 특수문자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작성
- 2) 본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연구요약’ 탭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신청 시 입력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해야 함

II. 연구 내용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작성방법】 ※ 제출 시 삭제

- 1) 연구의 필요성, 주제의 창의성, 선행 사례와의 비교 등을 포함하여 기술
- 2) 연구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 기술

2. 연구 내용 및 방법

【작성방법】 ※ 제출 시 삭제

- 1) 연구 내용과 방법을 기술
- 2) 연구 내용, 방법, 범위, 자료 수집 및 확보 계획·방법 등 연구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 성과 확산 활동 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3.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작성방법】 ※ 제출 시 삭제

- 1) 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결과물을 포함하여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후속연구와의 연계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중간결과물 예시 : 조사자료, 인터뷰, 고문서, 동영상 등 일체의 자료

4. 연구 추진 일정

【작성방법】 ※ 제출 시 삭제

- 1) 추진 기간별로 연구수행 일정 및 내용 등을 기술

<작성 예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5. 6.		
7.		
8.		
9.		
10.		
11.		
12.		
2026. 1.		
2.		
3.		
4.		
5.		

5. 참고문헌

【작성방법】

- 1) 참고 문헌에는 통상적인 참고문헌 리스트만 기재하며, 임의로 참고 자료를 추가 포함하는 경우
요건심사 및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 참고문헌은 연구 활동 계획서 작성 분량 제한인 10페이지 이내에 포함되지 않음

불임4

사업 참여 요건 유지 확약서 양식 (선정 후 제출)

사업 참여 요건 유지 확약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 , 휴대전화 :
소속(주관연구기관)	

상기 본인은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지원사업 연구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반납 등의 조치·처분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본인은 연구개시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본 연구과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분변동(취업 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한 소속기관 산학협력단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재단으로 공문발송)
- 본인은 사업 참여 요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한국연구재단 및 주관연구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성명 : (서명)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 본 확약서는 신청 시 제출하지 않고 선정된 경우에 주관기관에 제출합니다.

불임5

문의처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사업 및 신청 관련 문의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042-869-6133 042-869-6205 042-869-6203
	인문학단	042-869-6148
평가 관련 문의	사회과학단	042-869-6307
한국연구자정보(KRI) 입력방법,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전산장애 관련 문의	문화융복합단 (예술체육 및 복합학분야)	042-869-6633